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6 발의연월일 : 2025. 3. 12.

발 의 자:김형동·김소희·조경태

우재준 • 임종득 • 배준영

박덕흠 · 강대식 · 임이자

박정하 • 조지연 • 권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	제40조(조업정지명령)
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	
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	
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u>해당</u> 배출	<u>6개월 이내</u>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